

## 4. 建築法施行規則 改正令(案) 立法豫告

資料提供：建設部

### 1. 개정 사유

법과 시행령이 국민편의 증진과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 등의 방향으로 '92.6.1 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.

### 2. 주요 골자

가. 건축허가 및 신고를 위한 제출서류를 축소하고 서식을 정비함.

1. 건축허가 관련 서식 34종의 내용을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전산화에 대비하여 간소화하고, 특히 건축신고시 사용하는 서식의 기재내용을 대폭 줄이고 단면도 등 3종의 첨부서류를 생략토록 함.

2. 건축허가시 제출토록 되어 있던 설계도서중 구조계산서, 실내마감도와

시방서 등의 제출을 생략토록 함.

3.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이 시행되는 공사감리보고서, 철거신고서, 자재 및 인력소요 파악을 위한 공사계획서의 양식을 새로이 정함.

나. 건축공사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차의 허용범위를 새로이 정함.

건축물의 공사중 발생하는 오차의 허용범위를 건축물의 높이, 대지안의 공지, 건축물간의 거리 등 항목별로 100분의 1이상 100분의 5의 범위로 정함.

다. 기타 미비점 보완

도시설계의 내용표기방법 등 세부작성 기준을 정함.

※ 이 규칙안은 건설부가 4월 21일 입법 예고 한 것으로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.